



의 안 번 호	제179호
회 의 연 월 일	2021. 11. 15. (제476회 정기회의)

심의
·
의결
사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생활안전국)
제출연월일	2021. 11. 4.

생활질서계장, 생활질서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제안이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과다노출) 조문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6. 11月)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률 조항에 맞추어 시행령의 별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과다노출’의 별표 규정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로 개정 함(안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제2조 관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법 제3조제1항제33호(과다노출)의 범칙행위란 중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를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제2조 관련)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제2조 관련)		
법 제3조 제1항제 33호(과 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띄이 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 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 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 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5 만 원	법 제3조 제1항제 33호(과 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 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 ----- -----	5 만 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생활질서과	
연 락 처	02 - 3150 - 1354